
2017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

- 사업계획(안) -



경기도체육회

GYEONGGI-DO SPORTS COUNCIL

2017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사업계획(안)

1 목 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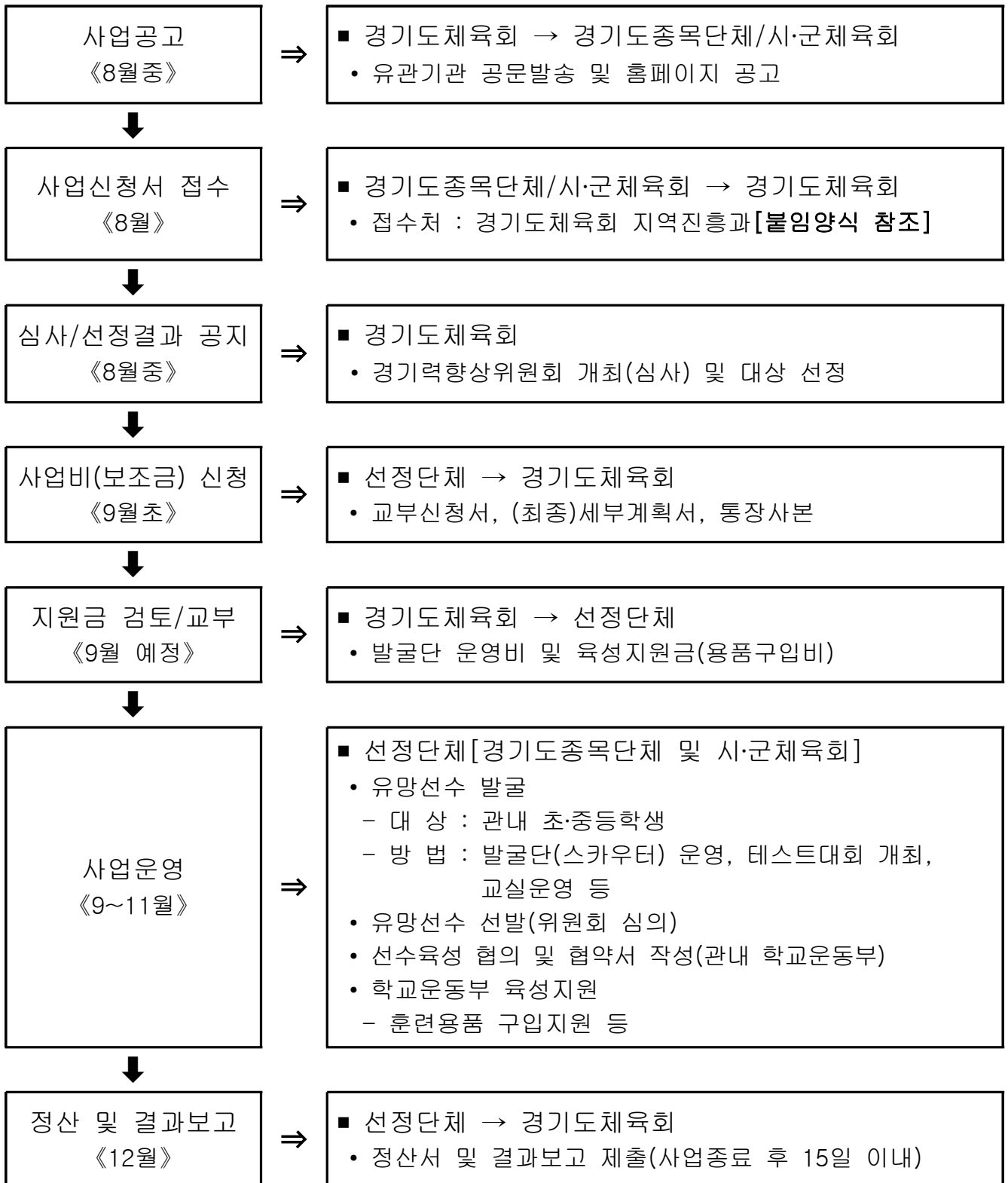
- 도내 우수한 체육 인적자원을 활용하여,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유망 선수를 발굴·육성함으로써 체육 붐도로써의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
- 신규 발굴한 유망선수의 운동부 연계육성 및 훈련용품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선수 육성

2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7년 6월 ~ 11월(6개월간)
- 신청자격 : 경기도종목단체, 시·군체육회
- 대 상 : 경기도내 유소년 *엘리트선수 제외
- 사업량 : 사업심사를 통해 10개 단체 내외 선정
- 사업내용
 - 경기도내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망한 유소년(초·중등생)을 발굴하여 엘리트 선수로 육성
 - 종목별 유망선수 발굴 프로그램(발굴단 운영, 대회개최, 교실운영 등)을 운영하여 도내 유망선수 발굴
- 주 최 : 경기도체육회
- 주 관 : 경기도종목단체, 시·군체육회
- 후 원 : 경기도

3

추진절차(2차)



4

사업신청 및 지원 제한사항

○ 사업신청

- 제출서류 : ① 사업신청서, ② 사업계획서 [붙임양식 참조]

- 신청방법

① 신청기간 : 2017.8.7.(월) ~ 8.18(금) 18:00까지

② 신청방법 : 공문서 제출(전자문서 및 이메일)

③ 제출처 :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과

☞ 이메일 : hn5764@hanmail.net

☞ 문의 : 031-250-0442

○ 지원 제한사항

- 국비, 지방비 등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업 및 유사 중복사업

- 현재 등록된 운동선수에 대한 육성사업

- 보조금 횡령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 등

5

지원방향

○ 발굴된 유망선수는 관내 학교운동부로의 진학 및 (신규)선수등록을 기본으로 함

- 유망선수 육성지원은 학교운동부에 대한 훈련용품 지원으로 제한함 (선수 개인에 대한 장학금 지원불가)

- 학교운동부가 없는 종목은 종목단체의 연계육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,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

○ 학교운동부의 합숙 및 위장전입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동부가 있는 학교 내 학생의 선발을 우선으로 하며, 관내(동일 시·군 內) 연계육성이 가능한 종목으로 제한

- 경기도종목단체의 경우, 다수의 시·군에서 유망선수를 발굴할 수 있으나 학생의 관외이동을 통한 육성지원 불가
- 동일 시·군, 동일 종목에 대한 육성계획이 중복접수 될 경우, 경기도 종목단체에 우선배정
- 육상, 수영, 체조 등 정책종목¹⁾ 및 비인기 종목 우선선정
- 대상(시·군체육회, 道종목단체)별 최대 지원금은 10,000천원으로 제한

6 심사기준

- 대상선정
 - 사업계획서 접수 완료 후 사업계획의 충실도, 시·군의 연계육성 여부, 종목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종목 결정
 -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시키는 종목 중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
 - ① 본회 가입이 승인된 종목
 - ② 동·하계올림픽 및 전국동·하계체육대회 정식종목

하계 : 육상, 수영, 축구, 야구, 테니스, 정구, 농구, 배구, 탁구, 핸드볼, 럭비, 사이클, 복싱, 레슬링, 역도, 씨름, 유도, 검도, 궁도, 양궁, 사격, 승마, 체조, 하키, 펜싱, 배드민턴, 태권도, 조정, 불링, 롤러, 요트, 근대5종, 카누, 골프, 보디빌딩, 우슈, 핀수영, 세팍타크로, 소프트볼, 트라이애슬론, 스쿼시, 당구, 산악, 댄스스포츠, 바둑

동계 : 빙상(스피드스케이팅, 쇼트트랙, 피겨), 아이스하키, 바이애슬론, 컬링, 스키(알파인, 크로스컨트리, 스키점프, 노르딕복합, 프리스타일, 스노보드), 봅슬레이·스켈레톤, 루지

1)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규정 제2조 13항에 의거, “정책종목”이라 함은 「교육기본법」 및 관계법령에 의거 설치된 체육 중·고등학교(또는 체육과)에서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육상, 수영, 체조, 유도, 역도, 양궁, 사격, 레슬링, 복싱 등의 종목을 말한다.

- 선정방법 :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사
 - 경기도내 육성팀이 적은 종목 우선 선정
 - 정책종목 및 비인기종목 우선지원
 - 관내 연계육성이 가능한 종목 및 시군 우선 선정 등

7 유망선수 발굴 및 선정

- 발굴방법 : 종목특성에 맞춰 자율적 운영하되 평가를 위한 객관적 (정량적 데이터) 측정 필수
 - 선수발굴단 운영 : 종목별 전문가(사무국장 및 전문체육 지도자 등)로 구성된 스카우터 운영
 - 대회개최 : 종목에 관심있는 참가자를 모집하여 운동기능 측정
 - 교실운영 : 관심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단기 육성프로그램 운영 (체력 및 운동기능 훈련 등)
- 선정방법
 - 시·군체육회 또는 道종목단체의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망선수 선정
 - 육성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망 선수 선정인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함
 - 유망선수 선정은 경기력이나 신체조건 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, 평가결과는 사업비 정산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(정량적 평가항목 반드시 포함)

○ 선정기준[경기력 이외 조건]

-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목에 대한 선수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
- 엘리트 선수로 진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,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함
- 후보 선수의 조건이 동일할 경우,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선발을 우선으로 함[별첨 1 참조]

8

향후 관리방안

- 유망선수로 선정된 학생은 학교 운동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해야 하며 양자간 협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함[별첨 2 참조]
- 유망선수 육성지원금은 협약을 체결한 학교 운동부로 지원되어야 함
- 학교 운동부와 협약서 체결 후 만1년 이내 선수의 방출 및 이탈 등으로 선수 육성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, 사업비 반납
- 최대 3년간(협약을 체결한 학교에서 육성하는 기간) 선수의 훈련 및 경기실적 관리

참 고 자 료

I. 사업신청서 양식

II. 사업계획서 양식

III. 사회배려계층 구분

IV. 선수육성 협약서(양식)

2017 유망선수 발굴육성 사업신청서

신청기관	구 분	시 군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		
	기 관 명		대표자명	
	주 소			
	담당자 직책		전화번호	
			핸드폰번호	
			이메일	
예산 단위 천원	신청금액	금일천만원 금 원		
	총사업비	지원금 도비	자부담	기타재원
사업개요	사업기간	년 월 일 월 일		
	육성종목			
	사업장소	시 군명 기재		
	대 상	초등부	중등부	
	방 법	발굴단운영	대회개최	교실운영
	학교운동부 육성현황	해당 시 군 학교운동부 현황 초등부 팀 중등부 팀 고등부 팀		
위와 같이	유망선수 발굴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			
		년	월	일
	기관명		직인	
경기도체육회장 귀하				

2017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사업계획서

사업명 유망선수 발굴 육성

사업목적 및 필요성

사업개요

사업기간

육성종목

사업장소 시 군명

사업대상

주요내용

선수육성 현황

종 목	시 군 사업장소	선수단 육성현황				비 고
		초	중	고	일반	
육성팀 수						

사업운영 계획 안
유망선수 발굴

유형	운영개요	비고
발굴단 운영 대회개최 교실운영 택	운영기간 또는 일시 장 소 대 상 방 법	

유망선수 선발 심의

학교운동부 연계육성 계획

중장기적 선수관리 방안

기대효과

소요예산

지원신청액 금 원

년도 총사업비

단위 : 천원

계	지원금 도비	자부담	기 타

산출내역

단위 : 천원

재원	과 목		금액	산 출 내 역 원	
	목	세목			
총 계					
지원금 신청액	소 계				
	운영비 대회개최	시설임차			
		운영요원 수당			
	선수육성 지원비	피복비			
		훈련용품			
소 계					
자부담					

구 분		편성 가능항목	비 고
운영비	발굴단 운영	여비, 간담회비 등	
	대회개최	시설임차비, 제작비(현수막, 홍보물 등), 용품구입비 등	
	교실운영	강사수당, 시설임차비, 제작비(현수막, 홍보물 등), 용품구입비 등	
선수육성지원비		훈련복 및 훈련용품 구입비	

사회배려계층 우선 선정 기준

지원순위	내 용	비 고
1순위 (기회균등 대상자)	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②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(최저생계비 120% 이내) 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) ⑤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(최저생계비 150% 이내)	
2순위 (사회다양성 대상자)	① 소년/소녀가장(형제/자매 포함) ② 조손가정 학생 ③ 북한이탈주민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해당자) ④ 순직군경 자녀, 순직소방대원 자녀, 순직교원자녀 ⑤ 다문화가정 자녀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해당자)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)	

협 약 서

(학교명) 학교와 유망선수 (선수)는 경기도체육회에서 지원하는 「유망선수 발굴·육성 사업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- 1. (학교명)는 (선수)를 우수한 엘리트 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정서적, 신체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.
- 2. 본 사업의 유망선수로 선정된 (선수)는 학교 운동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하여,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3. 유망선수 육성지원금은 금0,000,000원(상당의 운동용품)으로 하며, 만 1년 이내 선수방출 또는 이탈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(육성지원금)를 반납한다.

협약대상자

- 선 수 : (서명) / 연락처
- 주민번호 :
- 학 교 명 : (직인)
- 담 당 자 : (서명) / 연락처

2017. . .

(주관단체)○○○○회장 귀하